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국 가 공 무 원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외에 다자녀 양육자도 공무원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및 단순위헌 결정(2020헌가8)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헌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공무원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에서 우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실·국장급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안 제28조의4)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사회에 유연한 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3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함 라.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4항)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마.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처분권자 외에 처분제청권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안 제83조제4항)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 양육자"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파면·해임되거"를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로,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본문 중 "6개월"을 "6개월(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제69조제1호 본문 중 "제33조 각 호의"를 "제3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처분권자"를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제8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 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	제26조(임용의 원칙)
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	
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u>	<u>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u>
<u>층</u>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u>층・다자녀 양육자</u>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	
다.	<u>.</u>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	
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	
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	
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	
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이 경우 「정부</u>	<u><</u> 후단 삭제>
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	

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 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 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1. ~ 6의3. (생 략)

가.•나.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 6의3. (현행과 같음) -----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하며, 벌금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집행유예---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나.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 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 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 -- 6개월(제73조의3제1항제4호 된 사람의 직급 • 직위 또는 상 또는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당 계급(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 는 경우에는 3개월)-----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 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 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9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 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제71조(휴직)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T 3	ਨ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3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u>만 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생략)

③ ~ ⑤ (생 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 략)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1. ~ 3. (현행과 같음)			
4. <u>용세</u>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			
300 = (-1 3 6) +1 = 3 +1 +1 =1 1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u>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
	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8315